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장호덕손만두]’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21341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2. 12. 08.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23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용건로106번길 23-6 (배양동) 덕이네칼국수 가맹본부

대표번호 : 1668-0045, 031-223-194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서류

-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첨 3] 원·부재료 및 상품 목록
- [별첨 4]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장호덕손만두	덕이네칼국수	경기도 화성시 용건로106번길 23-6(배양동)	
		대 표 자	장호덕
		사업자등록일	2017. 9. 10.
		사업자등록번호	642-06-0066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가맹희망자는 앞으로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 이라고 합니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덕이네칼국수	-

상 호	덕이네칼국수 ()점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 또는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220148408
광 고	-	-

※ 가맹본부의 명칭, 상호, 상표(서비스표)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한 영업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가맹본부의 직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50,728	167,561	-16,832	566,444	-10,343	-7,250
2022	148,951	123,587	25,364	749,692	-130,150	-135,224
2021	199,952	112,041	87,910	475,693	49,964	30,941

나. 가맹본부의 직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위 가항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개인별 사업경력

가맹본부의 사업자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이 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개인사업자	장호덕	대표자	2017. 9. ~ 현재	장호덕손만두 대표자	경영 총괄
		대표이사	2019. 8. ~ 현재	최강달인푸드(주) 대표이사	업무총괄

7. 직전 사업연도 말 직원의 수

가맹본부의 작년 말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 수		직원 수
상근	비상근	
-	-	9

※ 가맹본부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의 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장호덕손만두	가맹사업경영	2018.08.~현재	장 호 덕 손 만 두 (등 록 번 호:20181053)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가맹본부가 사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미지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자 : 2022.08.10	출원번호 : 4020220148408 등록번호: 4021405410000	장호덕	2034.01.15
권리범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사용				

※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출원 중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해당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 없음

직영점 시작한 날: 2022. 08. 19.

2.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장호덕손만두	덕이네칼국수	장호덕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화성시 용건로106번길 23-6(배양동)

3. 가맹사업의 업종

영 업 표 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덕이네칼국수	기타외식	샤브샤브, 칼국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1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1						
2022						
2023						

6. [덕이네칼국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단위:개)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가맹본부	장호덕손만두	기타외식	장호덕손만두	20181053	152/1	158/-	168/-

7.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 가맹점사업자 1인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추정)

지 역	가맹점수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비 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 한	면적 3.3㎡당	하 한	면적 3.3㎡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구체적 산정기준

해당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가맹본부는 자신만의 부담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브랜드 이미지, 상품, 가맹점 모집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2023년 지출한 광고 및 판촉비는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화성분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68	031-278-2110

- ※ 가맹점사업자는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1) 개인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제휴서비스 → 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 → 가맹금 예치, 2) 기업인터넷뱅킹 → 증명서/기업지원 → 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 → 가맹점사업자 → 가맹금 예치를 클릭하여 장호덕손만두 예치계좌에 예치대상 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또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확인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각 목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 또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급 또는 투자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구분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 고
가입비, 기초교육비	가맹본부	전액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전액 예치	확정금액
기타 투자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나. 가입비와 기초교육비

구 분	금액(vat포함, 원)	예치기한	반환 조건	비 고
가입비	5,500,0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전까지 계약해지	
기초교육비	3,300,000		교육 시작 전까지 계약해지	
총계	8,800,000	-	-	

※ 가입비는 영업표지의 최초 사용허락의 개시, 가맹사업의 운영 노하우 전수, 상권분석, 영업 준비 및 오픈 후 정착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개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상품조리 및 가맹점 운영 등에 대한 기본지식 및 기술의 전수하기 위한 최초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

구 분	금 액(원)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	철거 및 원상회복 확인 후 7일 이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vat없음)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시 계약이행보증금 가운데 가맹본부 또는 갑이 지정한 원·부재료 및 상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잔존 미납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 등과 정산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별도의 계약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최강달인푸드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라.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원)	예치여부	지급기한	비 고
가입비	5,500,000원	전액 예치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부가세포함
기초교육비	3,3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원			부가세 없음
합계	10,300,000원			

2)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교육비 등	가맹본부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비용소요 -본부의 대체출점에 대한 기회비용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본부 대여품에 대한 정산하여 잔액 상환 (파손/기한 전 가맹계약 종료 등)		

--	--	--	--	--

마. 가맹점사업자가 기타 투자하여야 하는 비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반 기준 평수 50평]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	비공개	53,000	1,06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시설집기	비공개	16,000	320			
간판/싸인물	비공개	7,000			미공급시	사용 자율
서빙로봇	자율계약	렌 탈				
POS,CCTV	비공개	렌 탈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자율계약				보험사 문의	
초도물품대금	협력업체	5,000		물품입고 당월	상품 미공급시	
총 계		81,000	업체와 별도 협의			

[기준 평수 70평]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	비공개	75,000	107.2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시설집기	비공개	19,400	277			
간판/싸인물	비공개	8,000			미공급시	

서빙로봇	자율계약	렌 탈				사용 자율
POS,CCTV	비공개	렌 탈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자율계약				보험사 문의	
초도물품대금	협력업체	6,000		물품입고 당월	상품 미공급시	
총 계		108,400	업체와 별도 협의			

[기준 평수 100평]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	비공개	94,000	94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시설집기	비공개	24,000	240			
간판/싸인물	비공개	10,000			미공급시	사용 자율
서빙로봇	자율계약	렌 탈				
POS,CCTV	비공개	렌 탈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자율계약				보험사 문의	
초도물품대금	협력업체	7,000		물품입고 당월	상품 미공급시	
총 계		135,000	업체와 별도 협의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포컨디션,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 증설, 덕트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외부공사(테라스, 자동문, 창호 포함), 주방순간온수기, 냉동장고, 어닝,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지방 체제비 등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평형대라도 점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이 위 면적당 금액에 해당 매장의 면적을 곱한 금액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점포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불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과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점포 임대를 위한 부동산 관리비용(보증금/관리금)을 제외한 투자비입니다.
- ※ 귀하가 인테리어 공사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 및 도면제공비는 면제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시 지정업체의 매뉴얼 제공비가 추가 발생되며, 약 3,300천원 [기준평수 초과 또는 미만시 평당 55천원 증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지정업체 이외의 가맹희망자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당사의 관리 및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관리감독비(도면제공 등)로 약 4,400천원 [기준평수 초과 또는 미만시 평당 11만원 증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가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별첨 1-6>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지정한 업체가 제공받는 인테리어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유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 가맹점 입지 선택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권분석 서비스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분석 자료는 점포의 입지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로서 예상매출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가맹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인 아닐 것 -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종업원 (홀/주방)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9세 이상 단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필 -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	-----------	--

※ 가맹점사업자의 건강 진단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포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당사에서는 가맹비 등을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3. 원 · 부재료 및 상품 목록을 통해서 세부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맹금 분납제도

가맹본사는 예치 가맹금에 대한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변할수없는사유	비 고
개별 광고비	자율선택	-	-	-	-	

개별 판촉비	자율선택	-	-	-	-	
교육비	가맹본부	-	-	-	-	
로열티	가맹본부	월매출액의 2.2%	익월10	없음	후불	
음식물배상책임 보험비	자율선택	협의	-	-	-	
POS 관리비	협력업체	협의	-	-	-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	-	-	지급기한 경과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	-	-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자신만의 부담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을 권유 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점포환경개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는 2023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방 법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와 비교	수시	통지 후 방문 또는 암행 방문
QCS관리	“QCS”는 Q(Quality), C(Cleanliness), S(Service)의		

	약자로 품질, 청결, 서비스를 뜻하며, 가맹점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가맹점 운영원칙		
--	--	--	--

※ 가맹본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연장이나 영업중단이 없는 재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들의 지급조건이나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가맹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요구 거절 사유, 자동갱신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 일반적 해지 사유, 즉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는 사전 승인 기한을 가맹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로 인하여 기존 가맹계약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때 양수인은 가맹본부와 사이에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예치한 뒤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계약기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시 기존 가맹점의 설비 등에 관하여 일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방설비·기구 및 집기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관한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후 가맹계약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가맹점 운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가맹본부에 **양수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인은 별도로 **가입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는 해당 가맹점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의 양수도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금 계약 등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가맹본부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갑의 영업표지, 식별기호,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 하고,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설비·물품·영업매뉴얼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철거·제거 완료를 통지받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위 철거·제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직접 철거 내지 제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철거·제거 비용을 계약이행보증금에

서 우선 정산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부터 변제 시까지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로부터 차용한 물건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 목	단 위	공급가격(부가세 포함)		거래상대방
			상 한	하 한	
1	해당없음				

2					
3					

※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은 물가 인상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가맹본부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하여 별도의 경제적 이익의 수취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수취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수취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본부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품 또는 용역만을 취급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덕이네 샤브 칼국수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 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없음.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 시	2022년 11월기준
칼·만두			
덕이네 샤브칼국수 3인세트			
덕이네 샤브칼국수			

4인세트			
덕이네 피자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새우 고기만두			
새우 김치만두			
꼬마 고기만두			
꼬마 김치만두			
갈비만두			
매운만두			
찜빵			
샤브 소고기(100g)			
칼국수 사리(1인)			
야채 추가			
전골만두 추가(3개)			
볶음밥			
전골용만두(15개)			
찜빵(20개)			
칼국수(한팩)			
야채(한팩)			
육수(1.5L)			
소주			
맥주			
막걸리			
사이다			
콜라			
환타			

해약가능
(단,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표시되지 않는 메뉴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위에 표시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메뉴에 대한 맛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표에 기재된 메뉴를 삭제할 수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나.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단,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한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거래상대방 별도 기재된 제품은 판매 할 수 없음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가능 (단, 위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고 객	겉절이 과김치			

※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판매되는 메뉴에 대한 표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뉴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주메뉴	덕이네 샤브칼국수(1인)	13,00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문 발송 및 카카오톡,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022.11월 기준
	칼 · 만두(1인)	9,000		
	덕이네 샤브칼국수(2인)	26,000		

	덕이네 샤브칼국수(3인)	39,000
	덕이네 샤브칼국수(4인)	52,000
	3인세트	43,000
	4인세트	55,000
사이드 메뉴	덕이네 피자	15,000
	고기 왕마두(6개)	6,000
	김치 왕만두(6개)	6,000
	새우 고기만두(6개)	6,500
	새우 김치만두(6개)	6,500
	꼬마 고기만두(8개)	6,000
	꼬마 김치만두(8개)	6,000
	갈비만두(8개)	6,500
	매운만두(8개)	6,500
	찜빵(6개)	6,000
추가 메뉴	샤브 소고기 (100g)	5,000
	칼국수 사리(1인)	2,000
	야채 추가(한접시)	2,000
	전골만두 추가(3개)	2,000
	볶음밥	2,000
포 장	전골용 만두(15개)	15,000
	찜 빵(20개)	18,000
	칼국수(한팩)	5,000
	야채(한팩)	5,000
	육수(1.5:L)	5,000
주 류	소 주	5,000
	맥 주	5,000
	막걸리	5,000
	음료수	2,000

※ 위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증명한 후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업지역의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중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표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영업지역 설정기준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일반상권	- 원칙적으로 각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점 사이 직선거리 1km - 예외적으로 반경 500m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동/리를 달리하고 직선거리상 철길 또는 8차선대로로 구분된 경우에는 반경 250m, 가맹점사이 직선거리 500m	지도, 건축물의 용도, 실제 현황에 기초하여 설정
특수상권	일반상권과 독립한 별도의 영업지역 설정	

※ 특수상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리조트, 대형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군부대, 영화관, 대형병원, 대형공원, 구내식당 등을 의미합니다. 특수상권 내의 직영점·가맹점은 해당 특수상권 외의 지역으로 배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절 차	방 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특수상권, 철길, 8차선대로 등의 신설, 특수한 환경에 따른 상권분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의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동의 또는 동의 간주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단, 위 기간 내 미회신시 동의 간주) - 동의 또는 동의 간주 시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가맹점 입점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배달 등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에 관하여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인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체재를 거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바.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인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대체재를 거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은 향후 법령, 정부정책, 영업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해당없음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 당사는 2023년에는 해당 영업표지로 영업한 직영점 외 가맹점이 없어서 이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연도	오프라인(가맹점만)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202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사는 2023년에는 가맹점이 없어서 가맹점의 전용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가. 가맹계약의 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 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원·부재료 및 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 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 스기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⑦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⑨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⑩ 전체 가맹기간이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초과된 경우 ⑪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⑫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⑬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메뉴, 상품, 제품의 조리, 광고,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주방설비 및 집기일체, 원·부재료 및 상품의 구입을 거부한 경우

- ⑭ 과반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로 동의하여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계획에 동참하지 아니한 경우
- ⑮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탈법행위, 기타 비행이 언론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 ⑯ 가맹점사업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위생·안전·서비스 등에 대한 정당한 경영지도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⑱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자동갱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갱신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⑥ 가맹계약의 일반적 해지 사유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 해지 사유

가맹본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 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원·부재료 및 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 관한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지 못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메뉴, 상품, 제품의 조리, 광고,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 또는 원·부재료 및 상품의 구입을 거부한 경우

- ⑨ 과반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로 동의하여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계획에 동참하지 아니한 경우
- ⑩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탈법행위, 기타 비행이 언론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 ⑪ 가맹점사업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⑫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위생·안전·서비스 등에 대한 정당한 경영지도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⑬ 가맹점사업자가 공언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즉시 해지 사유

가맹본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마.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정보공개서 내용의 변경, 영업지역 등 영업환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의 수정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사전 고지 후 **계약갱신** 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요구 거절 사유, 자동갱신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 일반적 해지 사유, 즉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는 사전 승인 기한을 가맹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로 인하여 기존 가맹계약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영업방침으로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사이의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양수인과 사이에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양도인은 원 · 부재료 및 상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잔존 미납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 등을 정산한 나머지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가맹본부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새롭게 예치한 뒤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때 **새로운 계약기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시 기존 가맹점의 설비 등에 관하여 일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방설비 · 기구 및 집기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후 가맹계약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가맹점 운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가맹본부에 **양수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인은 별도로 **가입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는 해당 가맹점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의 양수도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금 계약 등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가맹본부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1)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 집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리행사의 경우 사전에 개인사정 등 그 필요성의 존재를 밝혀서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권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맹점운영권의 단독 상속인을 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점운영권의 단독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에는 가맹점운영권 양도 절차와 방식이 준용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독 상속인을 정하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 또는 재산으로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일반적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	------	-----

일 최소 8시간	주 최소 5일	- 계약체결 시 상권 및 가맹점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조정 가능 - 가맹점 휴무 시 사전에 고객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	---

2) 가맹점사업자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1) 가맹본부가 권장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수는 33㎡당 2명입니다. 그러나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에서 직접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함께 가맹점을 운영할 자를 대신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함께 가맹점을 운영할 자는 가맹본부와의 사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게 됩니다.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포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감독 절차	시 기	담 당 자
재고관리	담당자의 통지 후 방문 또는 암행방문 → 방문 후 점검 → 재고 관리표 또는 Q(Quality), C(Cleanliness), S(Service)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 및 확인	수시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의 위임을 받은 자
QCS관리			

※ 가맹본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고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는 자신만의 부담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브랜드 이미지, 상품, 가맹점 모집 광고 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 또는 판촉 행사의 경우 비용 분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동의한 후 가맹본부에게 요구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각 비용의 반액을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로 안분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개별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개별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위하여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가맹본부가 제작·배포한 가맹계약서, 가맹점운영관리규정, 각종 레시피 및 매뉴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로 전달한 영업지침, 교육 및 세미나 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서 습득하거나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 및 전자적 파일을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이 일반적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으며 위약벌 지급 사유가 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 불행사를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과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약벌 지급 사유	금 액
1.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탈법행위, 기타 비행이 언론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품질임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지정된 공급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직접 조달하여 제조·판매한 경우	10,000,000원
4.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000원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대한 정당한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위생·안전·서비스 등에 대한 정당한 경영지도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메뉴, 상품, 제품의 조리, 광고,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 또는 원·부재료 및 상품의 구입을 거부한 경우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가맹점사업자가 과반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로 동의하여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계획에 동참하지 아니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000,000원

다.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원·부재료 및 상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잔존 미납금, 손해배상액, 위약벌 등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의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응대 및 희망지역 확인	45일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부분 참조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에게 문서 교부(전자우편 등) · 정보공개서(교부 14일 후 가맹계약 체결)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10개점) · 가맹계약서 - 설명 및 상담	D-45	
사전 협의	- 가맹계약상 특약 및 가맹본부의 승인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기간 소요(자문 시 7일로 단축) - 가맹금 예치절차 설명 및 준비	D-45~31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작성(특약 및 승인사항 기재) -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 가맹금 예치(가입비, 기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D-30	
실측 및 준비	- 가맹점 실측 - 설비 제작 및 설치 준비 - 주방설비·기구 및 집기일체 입고 준비	D-30~25(3일)	
설비 제작 및 설치	- 전면새시, 전기설비 설치	D-25~15(2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 입고	- 주방설비·기구 및 집기일체 입고 - 원·부재료 및 상품 입고	D-15~3(10일)	

기초교육 실시	- 가맹점 운영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D-10~3(3일)
가맹점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소요기간은 33㎡ 규모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추정치로서 개별 매장의 환경, 가맹점 사업자의 선택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단축·연장·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에 대한 숙려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 ※ 가맹사업자는 자율계약으로 실시하게 되는 인테리어, 시설(도시가스, 전기중설, 소방, 냉난방, 수도, 화장실, 닥트, 외장, 가구, 상하수도유입, 음향기기 등), 간판 설치 공사를 실시하기 전 위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가맹본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담 시 **별첨 4.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통하여 희망지역 근처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해결 절차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 031-8008-5555, <http://www.gg.go.kr>)

다. 가맹계약에 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될 경우 가맹본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는 자신만의 부담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로열티, POS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별도의 금원을 수령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율계약으로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 시설 및 간판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점포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참고용)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사업 업종의 경우 청결한 상태의 노포(老鋪)가 인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며,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즉,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자신만의 비용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비용분담의 원칙과 예외	- 비용분담의 원칙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분담 - 비용분담의 예외(가맹점사업자만 부담)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비용분담 항목	- 간판 교체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 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비용지급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는 개별적인 판촉행사에 대하여 인력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매출 증진 등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방 법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위생·청결, 서비스 관리, 교육 등 가맹점 운영 전반	가맹점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 제시, QCS관리 수시 경영지도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및 주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을 주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해당없음

※ 가맹본부의 가맹점 CCTV/PTZ 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CCTV/PTZ 자료 열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CCTV/PTZ 자료 열람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클레임 발생 시 근거자료 활용
- 가맹점 위생상태 및 제품 제조과정 및 제품상태를 확인

단, 가맹본부는 영업시간 내 자료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요청시 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인과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단, 가맹본부는 매출자료 열람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 고
신규 교육	- 브랜드 소개 - 검수, 메뉴의 조리 방법 - 종업원 채용, 교육 및 관리 - pos 조작 및接客방법 등 - 친절 교육	이론 / 실습 (집합교육)	개점 전 교육 이수 / 통과	필수
보수 교육	- 신메뉴 교육 - 조리방법 재교육 (클레임발생/ 운영상태 미달 점포) - 친절, 위생 재교육 (클레임발생/ 운영상태 미달 점포)	이론 / 실습 (집합교육)	본부 요구 시 즉시	
현장 교육	- QCS 관리 교육	가맹점 현장점검/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기초 교육	8시간	3,300,000원	필수 교육 (가맹비등에 포함)
보수 교육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무료	
현장 교육	QCS관리 관리 교육 1시간	무료	

※ 기초교육시간은 숙련된 가맹점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최소시간입니다. 가맹희망자는 평균적으로 위 최소시간을 포함하여 3일 정도의 훈련시간이 필요한데, 사정에 따라서는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는 별도로 계약된 가맹점을 통하여 기초교육을 실시한 후 **충분한 훈련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교육일정에 대하여 미리 가맹본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가맹점을 함께 운영할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직원 등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 1인당 기초교육비 상당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교육 ·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사업자가 교육 ·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이는 가맹계약이나 영업방침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맹계약이 **일반적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IX.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1	경기	화성시 안녕동점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576, 1동 1층	
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503일	사업개시일부터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762,865	부가세신고내역

-끝-

별첨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1~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원·부재료 및 상품 목록(강제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10개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아니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